

공지사항

수입선 다변화 품목 공고

상공부 공고 제89-6호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9년 3월 24일
상 공 부 장 관

다 음

수입선 다변화 대상 품목

HS	품 목 명
3818 00 1000	반도체 제조용 실리콘 웨이퍼(구경 5' 6" 의 Polished Wafer에 한함)
8418 69 2000	흡수식 냉동기(50RT미만의 유니트형 제외) • 왕복동식 냉동기 • 스크류식 냉동기 • 원심식 냉동기 • 밀크 쿨러
8471 20 9000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개인용으로서 주 기억 용량이 기본 1.1MB 이하의 것)
92 2010	프린터(Serial Dot Matrix Type으로 300 CPS 이하의 것에 한함)
93 2010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디스크 직경 8 인치 이상의 것은 제외)
8504 40 2000	인버터(단상 0.5KVA 이상 50KVA 이하 및 삼상 10KVA 이상 750KVA 이하의 무 정전 전원장치와 삼상 0.5KVA 이상 400 KVA 이하의 전동기 속도제어장치에 한 함)
8516 60 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 포함)
79 1000	전기밥통
8517 82 1000	모사전송기기
90 9500	모사전송기기의 부분품
8518 40 0000	가정주파수증폭기(가정용으로 진공관식은 제외)
8519 21 1000	레코드 플레이어(신호처리가 디지털 방식 의 것으로 확성기를 갖추지 않은 것에 한 함)
99 9000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를 가진 음성재생 기기

HS	품 목 명
8521 10 1000	• 마그네틱 테이프 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 생용기기(가정용에 한함)
10 2000	
8525 30 1000	• 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가정용에 한함)
8527 90 9000	• 기타의 무선수신용기기
8529 10 9210	• 위성방송 수신용의 안테나 및 동부분품
8535 21 1000	• 진공차단기(정격전압 7.2K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000A 이하의 것)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 중 다음 의 것 - 배선용 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 함하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 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 이하의 것)
50 9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 전자 접촉 기를 포함하며 사용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kw 이하의 것)
8537 10 2000	• 자동제어반 중 선박용의 것과 프로그래머 블 콘트롤러
8539 39 2000	• 나트륨 램프
8544 11 1000	• 절연도로 피복 권선용 전선
20 0000	• 동축 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
60 2010	• 플라스틱 절연 전선(전압 10KV 초과 100 KV 이하의 것)
60 2090	• 기타 전선(전압 10KV 초과 100KV 이하 의 것으로서 Bus Duct는 제외)
60 3010	• 플라스틱 절연 전선(전압 100KV 초과 의 것)
60 3090	• 기타 전선(전압 100KV 초과 의 것으로서 Bus Duct는 제외)
9009 12 0000	• 전자식 복사기 중 보통용지 복사기(복사 원고 크기 A2 이상의 것 및 복사속도 A4 기준 50매/분 이상의 것은 제외)
9102 11 9000	• 일반 아날로그식 손목시계

부 칙

이 공고는 1989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민간기업의 대북방 경제협력 사업추진
지침 안내

'89.3.15 개최된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공지사항

확정된 「대북방 경제협력추진체계 정비방안」에 따라 경제기획원에서 마련한 민간기업의 대북방 경제협력사업 지침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대북방 경제협력 사업추진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민간기업의 미수교 공산권 국가에 대한 투자, 건설수주 등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행 법령상의 정부 허가절차에 앞서 초기단계부터 정부와 협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도 질서있는 대북방 경제협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대상국가

이 지침의 적용대상 국가는 소련,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중국, 몽고, 베트남, 라오스, 캄푸치아, 쿠바 등 미수교 공산권 국가로 함.

3. 투자사업추진 절차

○투자금액 100만불 미만 사업

- 종전 절차와 동일함.

○투자금액 100만불 이상 사업

가. 사업계획 등의 제출

1) 일반투자사업의 경우

- 해당기업은 상대방과의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Letter of Int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 이하 “의향서”라 함) 체결 등 최초 합의후 15일 이내에 의향서 사본과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국제민간경제협의회(이하 “IPECK”)에 제출하고 (단독투자의 경우 상대방국가에 대한 허가신청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IPECK에 제출), IPECK은 이를 접수 즉시 주무부처에 제출함.

- 단, 의향서 체결당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우선 의향서 체결 후 15일 이내에 의향서 사본만을 먼저 제출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PECK은 의향서를 먼저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추후 제출받는 즉시 주무부처에 송부함.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 사업내용
- 투자대상지역(국가 및 도시)
- 투자규모(총 투자금액과 우리측 투자금액)과 합작 투자비율
- 자금조달 방안
- 주요 투자조건 등

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 해당기업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에 해외자원개발 계획을 신고하면 주무부처는 즉시 그 내용을 경제기획원에 통보하고, 경제기획원은 이를 IPECK에 통보함.

나. 예비 검토

- 주무부처는 제출된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예비 검토하되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북방경제정책실사무위원회(이하 “실무위”)에 상정, 심의 확정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동검토기간을 초과할 경우 주무부서는 그 사유를 해당기업에 통보함.

〈예비 검토사항〉

- 투자업체의 적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 자금조달 가능성
- 과당경쟁 여부
- 외교 안보적 측면 등

다. 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

- 주무부처는 실무위의 심의 즉시 그 결과를 해당기업과 IPECK에 통보함.

- 해당기업은 주무부처의 통보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나 주무부처 통보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즉시 그

공지사항

내용과 사유를 IPECK을 통해 주무부처에 통보함.

라. 허 가

- 계약체결후의 일반투자사업 허가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허가절차는 현행 규정에 따름.

4. 시 행

- 이 지침은 1989. 4. 1부터 시행함.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이미 상대방과 본계약을 체결한 투자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 포함)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상대방과 의향서를 체결하고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투자사업은 의향서 사본 및 사업계획서(일반투자 중 단독투자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89. 4. 15까지 IPECK에 제출함.

- 다만, '89. 4. 15까지 상대방과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된 투자사업은 IPECK에 의향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정부의 예비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5. 기 타

- 이 지침에 따른 정부의 예비검토를 거치지 않은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해외투자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상공부 전자정책과(500-25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카탈로그 해외 배포 안내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카탈로그를 일괄 수집, 세계 71개국에 주재하고 있는 81개 무역관 및 3개 한국상품 상설전시 판매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불황 타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관심있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카탈로그 배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카탈로그 사용목적: 무역관의 바이어 거래알선 자료용,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 상담용, 바

이어 상담실 거래알선용.

2. 카탈로그 종류: 상품별 전문 카탈로그 또는 종합 카탈로그(영어 또는 제 2 외국어)

3. 카탈로그 규격: 가로 23.5cm, 세로 32.5cm, 50Page 이하. 단, 수출유관기관, 협회 등에서 제작한 종합 카탈로그는 제외

4. 신청부수: 무역관당 1~3부
단, 일본지역은 무역관당 5부까지 신청 가능

5. 신청기간: 1989. 5. 17~5. 27

6. 신청대상업체: 중소기업체

7. 소요비용: 무료

8. 신청서 교부 및 카탈로그 접수처

대한무역진흥공사 시장개척부 시장총괄과
(무역센터 13층 4호)

전 화 : 551-4367/72

「우수 KS 업체상」 포상 운용요령 개정

공급진흥청은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전국 “품질관리·표준화대회”시 시상하던 “공급표준화상”을 폐지하고, 금년부터는 “우수 KS 업체상”을 포상토록 하고 이에 따른 운용 요령을 공고하였다.

새로이 시행되는 “우수 KS 업체상” 제도는 현재 KS 업체수가 2,300여개에 달함으로써 이들 KS 업체의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KS업체 중 공진청에서 실시하는 연도별 사후관리가 충실하고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발굴, 포상기로 한 것이다.

포상은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으로 나누어서 금년도에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달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전국 품질관리 표준화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1. 목 적

공급표준화의 확산을 촉진하고 KS 표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급표준화의 실시상태가 우수한 KS표시 허가 업체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광공업

공지사항

- 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율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포상의 명칭과 부문

본요령에 의하여 수여하는 포상은 “우수 KS 업체상”으로 하며,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함.
 3. 신청요령
 - 가. 신청기간 : 6. 15~7. 15
 - 나. 신청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 1 호 서식)
 - 2) 사내표준화 현황 및 표시품 품질보증체제 설명서 30부(별지 제 2 호 서식)
 - 다.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공업진흥청 (표준국 표준계획과)
 4. 심사요령
 - 가. 심사방법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함.

 - 1) 서류심사

“사내표준화 현황 및 표시품 품질보증체제 설명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현지 심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2) 현지심사

서류심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학계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이 출장하여 현지 심사함.
 - 나. 심사기준
 - 1) 현지심사 기준표의 평가항목중 신청업체의 업종과 규모의 특성상 추진이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평가를 생략함.
 5. 평가 및 포상 결정
 - 가. 평가방법

현지 심사위원이 평가항목별로 업종과 규모 등 업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그 수준을 A (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E(미흡), E(미실시)로 평가하고 장단점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포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함.
 - 나. 포상 결정

포상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공업진흥청 차장을 위원

- 장으로 하고 공업진흥청 국장, 대학교수 및 관계전문가로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포상심사위원회는 현지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지 심사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우수한 업체를 「우수 KS 업체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함.
6. 시상

「전국품질관리·표준화 대회」에서 시상함.
 7. 수상업체에 대한 특전

KS표시 허가업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3년간 면제함.

KS표시 허가제품 및 홍보물에 수상내용을 홍보할 수 있음.
 8. 기타 유공자 포상

공업표준화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개인)에 대하여는 따로 포상함.

중국전자전 (IECM '89) 참가업체 모집 안내

본회는 중국전자전(IECM '89, 북경: 10. 23~27)과 관련하여 중국 최초의 공식적인 전문전자전인 동전시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온 바, 금번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본회가 공동으로 참가기로 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가업체를 추가 확대 모집하오니, 동전시회가 대중국시장 개척 및 동향 파악과 각 회원업체의 우수한 전자제품 홍보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사료되오니 관심있는 적극적인 업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1989년 4월 27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다 음

- 가. 전시회명 : 중국전자전(International Electronics, Components, Materials and Semiconductor Exhibition)
- 나. 개최기간 : '89. 10. 23~27
- 다. 개최장소 : 중국 베이징(Beijing Exhibition Center)

공지사항

라. 출 품 물 : 전자관련 부품 및 소재(재료, 반도체, 광섬유, 계측기, 부품제조 장비 등 포함)

마. 개최규모 : 5,000S/M (Net Space : 2,500S/M)

바. 임 차 료 : Shell Scheme HK\$3,400/SM
(US\$485.7/SM)

사. 주 관

- China National Import & Export Corp. (CEIEC)
- China Institute of Electronics (CIE)
- SHK Int'l Service Ltd.

〈한국참가 개요〉

가. 참가 목적

- 직접 참가를 통한 한국상품과 경제발전상 홍보
- 중국입국 상담을 통한 대중국 시장개척 및 동향 파악
- 대중국 진출 기반 조성 및 인맥 형성

나. 총참가 규모 : 90S/M (10부스)

다. 참가 방법

〈공동관〉

- 참가규모 : 27S/M (3 부스)
- 전시품 : 제품 샘플 및 업체홍보용 영문 카탈로그 전시
- 참가업체 모집수 : 15개사 내외
- 신청기한 : '87. 7. 30한
- KOTRA의 예산지원 가능으로 업체의 분담금 (참가비) 이 다소 낮아질 것임(업체당 예상참가비 : ₩600,000 내외)

〈단독관〉

- 참가규모 : 63S/M (7 부스)
- 참가업체 모집수 : 10개사 내외
- 단독참가 희망업체는 업체수에 따라 참가면적이 다소 조정 가능함.
- 참가신청이 많아 참가규모가 총 10부스 초과시 초과면적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단, 업체 부담으로 추가부스 확보는 가능함).

- 1 부스당 2명까지 상담요원 입국이 가능하나 필요시 협의를 거쳐 추가요원 입국 가능.

라. 참가업체 특전

- 전시장 임차료 및 기본장비 지원 (50% 정도)
- 전시품 무환 통관 협조 및 행정 지원
- 전시품 발송 및 통관 지원
- 현지상담 지원(통역 등)
- 출국에 따른 수속 및 기타 행정 지원

마. 참가업체 선정(참가신청업체가 예상초과 경우)

- 공동관 : 신청접수 순
- 독립관 : KOTRA 소정 선정 규정에 한함.

바. 신청 및 문의

강남구 역삼동 648번지 전자회관 12층(135-080)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전시사업부 사업과
교) 553-0941/7, 직) 553-872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의 발생방지를 목적으로 1974. 1. 4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대하여 경제규모의 급격한 팽창과 기술발전에 맞추어 체계를 재정립하고 국제적 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거함과 동시에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은 이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989. 4. 28일 입법 예고하였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의 취지를 보면,

- 모든 전기용품은 일률적으로 제조업의 허가 및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위해성의 고저에 따라 규제 정도에 차이를 두도록 하고, 제조업 허가도 등록제로 바꾸는 등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므로써 완화에 따른 업무량의 감소로 전기용품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체가 우리나라에 그 제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국내업체와 동일하게 제조업의 등록과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수입 규제 장벽을 없애므로써 국제적 통상마찰의 소

공지사항

지를 제거하고,

-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품목에 따라 7년까지 연장하며, 불이익 처분시 청문 및 이의신청제도의 도입과 벌칙의 상향 조정에 의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이의 세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전기용품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

- 1종 전기용품
 - 구조 사용방법 및 사용상황으로 보아 위해성이 많은 품목
 - 제조업 등록, 형식승인 대상
- 2종 전기용품
 - 1종 이외의 품목
 - 제조업 신고 대상

※ 대상품목

전품목(358개 품목) ⇒ $\left[\begin{array}{l} 1\text{종} : 250\text{여개 품목} \\ 2\text{종} : 110\text{여개 품목} \end{array} \right.$

2. 제조업허가제도의 변경

- 1종 전기용품
 - 허가제 ⇒ 등록제
- 2종 전기용품
 - 허가제 ⇒ 신고제
 - 기술기준 적합의무, 표시의무

3. 외국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업등록 및 형식승인 허용

- 1종 전기용품
 - 제조업 등록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2종 전기용품
 - 수입신고만 하도록 함.
 - 기술기준 적합의무, 표시의무

4. 수입전기용품의 형식승인 확인제도 신설

1종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1종 전기용품의 형식에 대하여 다른 1종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가 형식승인을 받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형식구분에 속하고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임을 공업진흥청장이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을 받은 1종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는 그 1종 전기용품의 형식에 대하여 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5. 형식승인 유효기간 연장
 - 일률적으로 3년 ⇒ 품목에 따라 3~7년
6. 청문 및 이의 신청제도 신설
 - 제조업 등록 및 형식승인 취소시 청문기회 부여
 - 각종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 부여
7. 형식승인 면제규정 신설
 - KS 표시품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면제토록 함.
8. 단속제도 개선
 - 법규 위반시
 - 형사처벌하던 것을 업무태만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 하도록 함.
 - 벌금액을 유이 법규 수준으로 상향 조정

정보처리 표준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 추진

- 공업진흥청은 최근 행정전산망 등 국가기간 전산망 및 VAN(부가가치망) 등 대규모 전산망을 구축함에 따라 이기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처리 표준화 분야 중 컴퓨터의 한글화와 같은 야국 독자적인 분야에 대해 '87년도에 공업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표준화 연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89년도에는 한글 폰트의 표준화 연구 등 5개 정보처리 분야에 대해 연구조사 사업을 실시키로 하였다.
- 금년에 수행되는 표준화 연구조사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퍼스컴에 사용되는 한글 폰트(글자체)가 미려하지 못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글 폰트의 표준화 연구” 사무자동화 일환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문서 파일에 대한 구성방식이 기간간에 달라 이를 표준화 하기 위한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문서 파일에 대한 표준화 연구” 문서기록 매체인 플로피 디스켓의 정보기록 방식이 달라 정보교환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서정보교환을 위한 플로피디스크 표준화를 위한 연구” 자료의 이용 효

공지사항

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시 방법의 차이, 언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및 시간지연을 방지하여 시스템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및 언어 표준화에 관한 연구”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 증대에 따라 사무자동화를 위해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우편 이용시 정보 전송 방법을 표준화 하여 신속한 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PC와 미니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우편 및 사무결재 시스템”의 표준화 연구 등 5개 분야이다.

- 앞으로도 공업진흥청은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추진시 필요한 컴퓨터의 한글화와 같은 아국 고유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을 증대하여 국가표준 규격을 자체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업진흥청 공보담당관실 (503-7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검사 품목의 축소

1. 공업진흥청은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유통중에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사후검사 품목을 현행 37개 품목에서 헤드폰, 재봉사 등 14개 품목을 삭제하고 스포츠용 구명복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27개 품목으로 조정하고 1989년 5월 1일에 시행키로 하였으며, 새로 추가된 품목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2. 금번 사후검사 품목의 조정은 그 동안 정부와 업계의 꾸준한 품질향상 노력에 의하여 공산품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나아가 대부분의 업계가 자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됨에 따라 정부의 직접 규제를 극소화 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품질수준이 향상된 품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사후검사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일부 국민소비생활 관련 품목에 대하여는 새로이 추가한 것임.
3. 이번엔 조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사후검사품목 37개 품목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안정이 필요하거나 불량자재의 사용이 우려되는 합성수지제 필름 등 23개 품목은 존속하되, 품질수

준이 향상된 옥외용 안테나, 형광펜 등 14개 품목은 삭제한 반면, 사후검사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스포츠용 구명복은 새로이 사후검사 품목으로 추가하여 사후검사 대상 품목을 27개로 축소 조정하였다.

4. 아울러 이번엔 조정된 사후검사 품목은 시중 유통상품에 대해 정기적(연4회)으로 품질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수거·파기,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량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5. 이번엔 조정된 사후검사품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조정결과

현행	존속	삭제	추가
37	23	14	4

• 삭제품목 (14)

온도계, 플로어인지, 양초, 헤드폰, 옥외용 안테나, 형광펜, 마킹펜, 앨범, 재봉사, 보통벽돌, 속빈 시멘트 블럭, 보통 시멘트기와, 시멘트 벽돌, 가압 시멘트판기와

• 조정결과 검사대상품목

구분	품목				
존속 (23)	합성수지제판 및 이음관, 합성수지제 필름, 알루미늄제 후라이팬, 합성세제, 공책, 필통, 수성볼펜, 자연학습교재, 음악학습교재, 가정용 주방용구(생크대), 착화탄, 목제책상·의자 및 철제 사무용 비품, 다운의류 및 침구류, 알루미늄 압출형재, 수경, 텐트, 할로겐 전구, 롤러 스케이트, 비닐장판, 완구, 안경테, 우산 및 양산, 여행용 가방				
추가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신규(1)</td> <td>스포츠용 구명복</td> </tr> <tr> <td style="width: 15%;">규제변경(3)</td> <td>유아용 이륜자전거, 등산용 버너, 직물제포대</td> </tr> </table>	신규(1)	스포츠용 구명복	규제변경(3)	유아용 이륜자전거, 등산용 버너, 직물제포대
신규(1)	스포츠용 구명복				
규제변경(3)	유아용 이륜자전거, 등산용 버너, 직물제포대				

공지사항

구매물품 공고 안내

장치가 시간이 경과한 아래의 물품들은 관세법 제122조, 제124조 및 예산회계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91조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세관에서 매각 공고를 하였으니 관련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부산세관 (051) 462-0011]

구매번호	제화번호	입상일자	선 명	B/L번호	품 명	규 격	수 량	화 주	장 치 장	세 액	매가 조건	매가금액
2	8-914	'88. 1. 13	Frotaric	JAN-EIRD1	IBM DATA Processing m/c 기존용도 사용물가품	M/T 3375 Bol	1 unit	국 민 리 스	P#42	118,300	수입	794,300
22	8-2284	'88. 5. 23	SE Endua- rance	NYBU 2014	Dimmer Switch	120 VAC 6000max	4,004pcs	세 방 기 업	세 방	1,626,040	"	10,917,715
83	8-2496	'88. 6. 24	SL Liberator	NYBU 2047	Dimmer Switch (진기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Carlson Bro- md Dimmers Model ELR-601	6,000ea	남구민락동 108	세 방 진CFS	2,397,580	"	16,098,082
94	8-2878	'88. 7. 30	EIM Pusan	SAVA NNAH PUSAN 2000	Polyester resin film		32,339M/T	REJA Co. Ltd.	부 원	1,680,330	"	11,282,281
103	8-3082		수출품		개 폐 기	SS22F25G 6 Ts23Eo2T (E) -12	10,250pcs 14,200pcs	오 양 무 역	동 일	277,760	"	1,865,000
121	9-290	'88. 10. 7	11도남	MJBH 8A-10026	규소강관 검량조건	HSC-2552S 10	34,980M/T	영 한 일 신 Int'l Inc.		1,221,180	"	10,990,732
127	8-2369	'88. 6. 10	KuRaMa maru	7BH 4631 2674	바 테 리	LPB 700	2 대	국 제 전 기	남 해	161,700	"	1,085,757
128	9-513	'88. 11. 7	E. Orient	Legrus 1165	헤 드 폰 수출만송품	Dynamic MDR-205	570개	신 일 해 운	동 운 진	161,930	"	1,199,590
144	88-332	'88. 3. 4	3도남	18141	Power Supply 외 3종 (감정서 참조)		124,158pcs	세 명 교 역	국보재송	684,640	"	4,586,864
163	88-611	'88. 6. 29	Omex pioneer	H380 23656	Aluminium Metallize Polypropylene film 검량조건	12My×14×2 12My×21×20	16kg 50kg	광림계산기	협성수영	126,740	"	851,040
180	88-5-76	'88. 2. 14	Luna Maersk	BREA 24252	모터부품		30,000pcs	Kost Co.	세방반여	5,316,570		35,697,000
195	88-12-23	'88. 8. 29	천 구	001	전자계산기	Canon PS-10	2,000 ea	동 룻 물 산	천 경	2,052,750	"	13,782,750
206	89-13	'88. 9. 5	K. Bridge	5013	LCD, Color TV	Citizen TC 53-1A	1 대	Kim Kook	대한색소	54,060	"	182,310
227	89-37	'88. 9. 29	K. Bridge	5046	전자계산기	Canon PS-10	2,000 ea	동 룻 물 산	대한색소	3,079,120	"	20,674,120
234	89-94	'88. 10. 11	K. Master	TB 5014	전자계산기	Cannon PS-10	2,648 ea	동 룻 물 산	대한색소	4,076,750	"	27,372,530

